

## 정부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현황



이 상 수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장

금년 1월 경기도 포천·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3월 23일 종식을 선언한 이후 4월 8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가위기경보 “경계(Orange)” 단계를 발령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내에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구제역 발생농장 및 인근 방역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가축(395농가, 49,874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매몰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정부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도에

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각 시·도의 현장 방역 지원업무를 총괄토록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 주관(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으로 구성)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5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지자체의 소독·예찰 등 방역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6.2 지방선거 기간 중 사람의 이동 등에 따른 구제역 전파를 막기 위하여 구제역 방역대책을 강화하였다. 우선 비발생 지역에도 주요도로 등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여 축산농장 출입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후보자 사무실 및 차량 등에 휴대용 소독기를 비치하였다.

선거·축산관련 차량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부착토록 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에 발판 소독조와 사람용 손 소독기를 비치하여 선거 전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군경 등이 합심하여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방역대

책을 추진함에 따라 금번 구제역은 5월 6일 청양 발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6월 19일경 구제역 발생지역에 취해졌던 이동제한 등의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될 예정(국가 위기경보는 “관심단계”로 하향조정)이다.

다만, 금번 구제역은 그간 8년간의 공백기로 인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번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10일부터 농식품부 내에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T/F는 농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과학원, HACCP 기준원,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대학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를 총 망라하여 구성 하였다. 아울러 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방역, 검역, 보상, 축산환경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향후 도입하게 될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략적으로 소개해 드리 고자 한다.

## ① 축산환경 개선분야

우선 가축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변화에 있다고 보고 축산업자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축산농가는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적절한 가축 사육밀도 유지 및 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당방역 등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등록 대상 축종을 기존 소·돼지·닭·오리에서 산양·면양·사슴·칠면조·거위·메추리·꿩·타조를 추가할 계획이며, 적정사육기준을 위한하는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② 방역시스템 개선 관련

금번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할 때까지의 신고체계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는 경우 시도 소속 가축방역관이 현장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관찰한 후 감염이 의심스러우면 의사환축 발생 사실을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초동 방역조치가 다소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 신고시에는 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전문가가 곧바로 현장 출동하여 이동제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농장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지형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방역대를 설정토록 하고, 발생농장과 같은 마을에 위치하는 등 생활권이 같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 안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얼마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흑한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동통제초소에서 취해야 할 소독실시요령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질병별·방역대별로 농가 행동요령 등도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시에는 전 기관과 축산농가가 합심해서 농장과 축산시설 주위에 대한 철저한 소독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축산농가, 사료·동물약품 등의 운반자 외에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축산시설의 방문이 잦은 관계자에 대해서도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반드시 작성·비치토록 의무화 하게 된다.

또한 전체 축산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 부주의로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 거래 상인에 대해서는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구

제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부대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살처분·소독 및 차량과 사람의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에 있다.

### ③ 검역제도 개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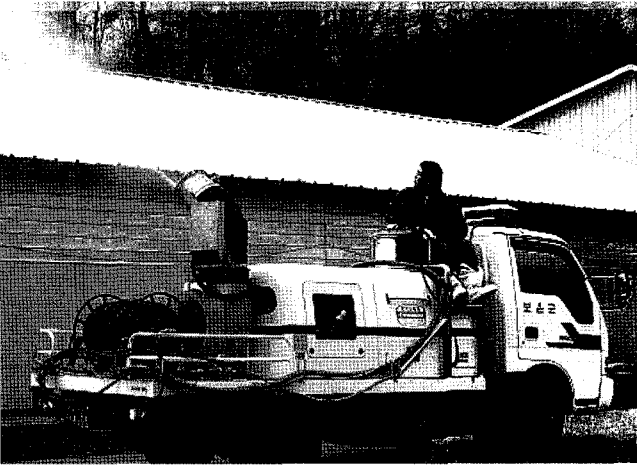
우선 해외 악성 가축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별로 지역 담당제를 상시로 운영하고 모든 공항만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조정 및 탐지견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운영기관(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행안부 등)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도록 제도화 하고 해외여행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받고 5일 이상 체류 후 축산농장에 출입토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국산 국제우편물, 탁송화물의 외부 소독, 조사료·톱밥·코코넛껍질 바이리스 검사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역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④ 보상제도 개선 관련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정부의 이동제한 폐쇄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그동안 법적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수의사, 인공수정사,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새끼돼지 생산 등에 의한 축사 부족으로 폐사되거나 매몰처리 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세부 실시요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가축의 질병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축산농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건강을 남이 지켜줄 수 없듯이 가축질병도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에 한번 유입되면 농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며, 이를 복구하는 데에 사회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 바이러스성 질병이 한번 발생하면 주변농가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내 이웃을 위해서도 농장 내외부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독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과 같은 질병의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농가와와의 접촉을 삼가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공기, 차량, 의복, 손 등 모든 것이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농가간 왕래를 금하고, 불필요한 모임 등은 반드시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 등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입국 후 5일 전에는 절대로 농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체나 옷가지 등 소지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제역의 조기 종식은 발생을 막기 위해 소독과 가축시장 폐쇄 등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철주야 노력한 전국 모든 축산농가와 방역기관 공무원, 관계기관, 협회 등의 공동 노력의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